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58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이재관·김종민·정동영

이광희 • 박지원 • 이병진

소병훈 · 신정훈 · 송재봉

김남근 · 강준현 · 문진석

김원이 · 허성무 · 이재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유출의 피해액과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출·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 행위를 소개·알 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15조제9호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 ·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		
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	위 금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		
	<u>는 행위</u>		